

예산총칙

2020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592,533,977	77,776,019
일반회계	2,262,175,230	67,865,257
특별회계	330,358,747	9,910,762
공기업특별회계	258,348,244	7,750,44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5,817,089	4,074,51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2,531,155	3,675,935
기타특별회계	72,010,503	2,160,315
교통사업 특별회계	26,405,868	792,17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772,086	53,163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355,964	100,679
대지보상 특별회계	655,000	19,650
기반시설 특별회계	105	3
수질개선 특별회계	9,434,289	283,029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0,320,331	309,610
균형발전특별회계	20,066,860	602,00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229,721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3,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